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9. 1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 1996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8월 2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96. 9. 10)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종현)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와 민영노외주차장시간 단위등 서울시와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시민 편의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 나. 주요개정내용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등)
 - 노외주차장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4으로 개정
 - 제13조(주차시간단위)
 -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 단위를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
 - 제2조제1항과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4급지 요금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 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년 2월 임시회의시 제정되어 공영및 민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운영을 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1) 조례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급에 따른 요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 2) 조례 제13조(주차시간 단위)민영주차장의 노외주차 시간단위를 최초 단위 30분 이내로 하고 초과할때 마다 15분 단위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세분하여 주민에 편의제공
-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3·4급지가 1·2급지와 격차가 크므로 재조정하여 격차폭을 줄여 형평을 기하기 위함.

4. 심사결과 : 부결(반대8표, 기권2표)

부결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입장에서 3·4급지가 없는 지역이고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부결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1996. 8.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요금체
계와 민영노외주차장 주차시간 단위등 서울시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주차장관리의 형평과 효율적
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등)
 - 노외주차장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
- 제13조(주차시간 단위)
 -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
- 제2조1항과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4급지 요금개정

3. 참고사항

- 조례개정(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

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중 “15분단위로”를 “10분단위로”로 한다.

제2조 제1항의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3급지, 4급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지	400원	200원	200원	3천원	5만원	-	300원	150원	4만원	2만원
4급지	200원	100원	100원	2천원	3만원	2만원	200원	100원	3만원	2만원

※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 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 1항 관련)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 초과	월정기권		월정기권		2시간 초과		월정기권		월정기권			
	1구획 15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3급지	-	4만원	-	4만원	4만원	3급지	200원	5만원	-	4만원	2만원		
4급지	-	4만원	4만원	2만원	2만원	4급지	100원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 <신설>						※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은 4만원으로 한다.							